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병무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2. ~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성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성과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청 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조정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총괄

1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제45조제6항 중 “7급 22명, 8급 9명”을 “7급 17명, 8급 14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481”을 “1,488”로 하고, 일반직 계 “1,481”을 “1,488”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19”를 “29”로, 행정서기보 “304”를 “301”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을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482”를 “1,489”로 하고, 일반직 계 “1,482”를 “1,489”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20”을 “30”으로, 행정서기보 “272”를 “269”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를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3”을 “12”로 한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6년 8월 31일”로, “2024년 9월 1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6년 8월 31일”로, “2024년 9월 1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8월 31일”을 “2026년 8월 31일”로, “2024년 9월 1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 당관 · 혁신행정담당관</u> 및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다.	② ----- <u>기획재정담 당관 · 혁신성과담당관</u> ----- ----- -----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③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 검 및 실적평가</u>	5. <u>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④ <u>혁신행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④ <u>혁신성과담당관</u>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총괄 및 조정</u>	11. <u>청 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조정</u>
12. <u>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u>	12. <u>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총괄</u>
13. <u>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u>	13. <u>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u>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복지연수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복지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지복지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복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22명, 8급 9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7급 3명 8급 5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괄[illegible]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② 삭제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u>2024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9월 1일</u>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③ ----- ----- ----- <u>2026년 8월 31일</u>----- <u>2026년 9월 1일</u> ----- ----- -----.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
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
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
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1명)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
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
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
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2026년 8월 31일 -----
----- 2026년 9월 1일 -----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 ----- ----- -----.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방부령 제109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 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 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 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 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 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u>2024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9월 1일</u> 이후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 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 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 <u>2026년 8월 31일</u>----- <u>2026년 9월 1일</u>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81</u>	<u>1,488</u>	+7
일반직 계	<u>1,481</u>	<u>1,488</u>	+7
·	·	·	
·	·	·	
의료기술서기	<u>19</u>	<u>29</u>	+10
·	·	·	
·	·	·	
행정서기보	<u>304</u>	<u>301</u>	-3
·	·	·	
<u>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u>방호서기보</u>	<u>13</u>	<u>12</u>	-1
·	·	·	
·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82</u>	<u>1,489</u>	+7
일반직 계	<u>1,482</u>	<u>1,489</u>	+7
·	·	·	
·	·	·	
의료기술서기	<u>20</u>	<u>30</u>	+10
·	·	·	
·	·	·	
행정서기보	<u>272</u>	<u>269</u>	-3
·	·	·	
<u>행정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방호서기보	<u>13</u>	<u>12</u>	-1
·	·	·	
·	·	·	